

## 실용적인 대학 특허 교육의 필요성



**이 세 진**  
변리사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석사  
독일 하노버대학교 생명공학 박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겸임교수  
한국생물공학회 공동위원장  
(현) 특허법인 다나 대표변리사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지식재산권은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명실 공히 “특허홍수” 시대가 도래하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144만 건이었던 전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2006년에 176만 건으로 5년 동안 22%가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산업재산권 출원을 많이 하는 나라로써 지식재산권의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6일 체결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농축산물, 자동차 등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 외에 핫이슈 중 하나가 보건의료 관련 발명의 보호 및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에 의한 외국 특허 공세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식재산권을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민관합동 회사인 창의자본 주식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2010년 9월 16일 출범하였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국내외 우수 아이디어와 발명, 특허 등을 확보해 권리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회사로서 2015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래 국가발전의 자원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실용적 특허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에 강한 연구인력 육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교육

이 절실히 필요하다. 독일은 1996년부터 공대에 INPAT(대학 특허강좌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공대의 지식재산 강좌가 1996년도에 65개 대학, 95개 학부에서 2000년도에는 127개 대학, 268개 학부로 확대되었고, 일본은 2005년도에 208개 대학, 153개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강좌를 개설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대학특허교육은 아직 태동기라고 할 수 있으며,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되어 2006년부터 대학특허교육을 시작하여 2008년도에 6개 대학원, 40개 대학에서 특허교육이 실시되고 현재는 약 200개의 지식재산권 관련 강좌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적으로 부족하고 이론·법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계 지식재산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체제하에서 특허정보 검색, 특허권리범위의 해석 등 실무중심의 실용적 특허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실용적 특허교육에 있어서 공학인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전달이 필요할 것이다. 공학인들은 학부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 또는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연구성과물을 창조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성과물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전 지식의 전달이 학부과정부터 이루어진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향후 연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다음의 내용이 최소한 숙지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여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본인이 발명한 내용을 특허출원하기 전에 학회나 논문으로 발표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논문 발표를 한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지 1년이라는 기한 내에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최소한 자신이 공개한 논문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 중국 등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히 기술이전을 염두에 두고 특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를 지정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더 학회 또는 논문 발표에 앞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의 전달이 학부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지식창출의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흔히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성과물이 특허로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거창한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는 것이고 이의 개량의 정도가 미미하면 과연 특허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특허법 상에서 발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마인

드를 대학교육과정에서 전달 받는다면 향후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성과물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과연 유사한 종래기술이 있는지 검색하는 도구 및 접근방법의 습득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2~3개의 종래기술의 조합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기준을 갖추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행기술조사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선행기술조사결과를 자신의 연구결과물에 어떻게 다시 피드백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면 향후 연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재산 전쟁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에 특허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지식재산 전문석사학위과정 개설 등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전문인력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일반 공학인들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최소한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접근방법을 습득하는 능력을 갖추어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